

大田直轄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29
----------	-----

提案年月日：1994年 5月 27日

提案者：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

1. 提案理由

諸證明等 手數料 減免對象이 生活保護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宅保護 對象者로 規定하고 있는바, 同一類型의 生計困難者인 施設保護對象者, 自活保護對象者, 醫療扶助者등에 대하여는 免除가 되지 않고 있는 實情으로써 手數料 免除의 根本趣旨에 衛平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2. 主要骨子

手數料 減免對象을 生活保護法施行令 第6條에서 規定한 居宅保護對象者, 施設保護對象者, 自活保護對象者, 그리고 醫療保護法施行規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로 그 範圍를 擴大(案 第8條)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제증명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제8조 (수수료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1.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u>생활보호법</u>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u></p> <p>2. (생략)</p>	<p>제8조 (수수료감면등) ① - - - - - - - - - - - - - - -</p> <p>1. <u>"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u></p> <p>2. (현행과 같음)</p>